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마루 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767호

다. 제출일자 : 2015. 10. 28.

라. 회부일자 : 2015. 10. 30.

## 2. 제안사유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5.11.11.(수)~18(수)

○ 의 견 : 의견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수정 동의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또는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sup>1)</sup>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 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014.2.6.일 일부개정, 2015.2.7.일 시행

-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 동안 부설주차장에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의무화<sup>2)</sup>되어 있어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주차대수 50대 이상 규모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획 설치기준을 3%로 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2~4 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기준을 “3%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조례에 부합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재설치 및 정비에 일정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시행일에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조정할 기간이 필요하므로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수정 동의’ 의견<sup>3)</sup>을 제출하였음

2)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차계획과-15248(2015.11.17.)